

##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이라 한다)와 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(이하 “지산맞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지산맞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‘지산맞 사업’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반영, 교육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2. 협약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개발·운영 등 지원
3.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층면접, 훈련기관 견학, 채용지원계획 등 훈련내용 및 협약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한 사전 탐색 기회 제공
4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의 역량수준 진단, 맞춤형 1:1 취업 컨설팅 제공,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
5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약기업은 재직근로자와 채용(예정)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수요조사 및 직무·수준별 훈련과정 설계, 훈련생 선발 면접 등에 참여
2. 필요할 경우 소속 재직근로자 중에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교육훈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3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에 대한 적극적 채용 협력

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
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
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산맞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산맞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로 한다. 다만, 지산맞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이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 년 월 일

(공동훈련센터)

(협약기업)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
주 소 :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     주 소 :

대표자 : 강 필 현 (인)

대표자 : (인)

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

※ 첨부서류 :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

##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이라 한다)와 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(이하 “지산맞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지산맞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‘지산맞 사업’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반영, 교육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2. 협약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개발·운영 등 지원
3.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층면접, 훈련기관 견학, 채용지원계획 등 훈련내용 및 협약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한 사전 탐색 기회 제공
4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의 역량수준 진단, 맞춤형 1:1 취업 컨설팅 제공,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
5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약기업은 재직근로자와 채용(예정)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수요조사 및 직무·수준별 훈련과정 설계, 훈련생 선발 면접 등에 참여
2. 필요할 경우 소속 재직근로자 중에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교육훈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3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에 대한 적극적 채용 협력

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
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
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산맞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산맞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로 한다. 다만, 지산맞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이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 년 월 일

(협약기업)

(공동훈련센터)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
주 소 :

주 소 :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

대표자 :

(인)

대표자 : 강 필 현 (인)

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

※ 첨부서류 :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

【 첨부 】

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

지역 ·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				
회사명			대표자명	
주소 (본사)	우편번호( )			
업 태		업 종		상시근로자수
담당자	성 명			HRD부서명
	전화번호			FAX
	전자우편 주소			홈페이지 주소
고용보험관리번호			사업자 등록번호	
【 기타 사항 】				